

### I. 출제경향 분석

출제영역		문항수	총 평
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		<b>1) 조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암기</b> 대부분의 문제에서 조문이 지문화 된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형소규칙 규정도 일부 출제가 되었다. <b>2) 판례에 대한 철저한 이해 및 암기</b> 대부분의 지문에서 판례가 출제되어 조문과 판례의 출제라는 등식이 또 한번 입증되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최근 개정법에 입각한 중요판례가 많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b>3) 총 평</b> 전체적인 문제의 난이도는 中上정도로 평가된다. 13번 문제는 수험생들이 대체적으로 어려움을 느꼈으리라 보이고, 3번 문제는 국민참여법의 배심원자격에 대한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수험생도 또한 어렵게 느꼈으리라 생각된다. 이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평이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04년도 행정고시 검찰사무직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었다는 점, 개정법에 입각한 중요판례가 다수 나왔고, 의미있는 전원합의체판결 또한 몇 있었는데 전혀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향후 2차 시험에서는 개선될 것을 기대해 본다. <b>4) 수험대비</b> 조문(형소법, 참여법, 형소규칙 등)과 중요 판례에 대한 철저한 이해 및 암기가 요구된다. 최신 판례에 대한 대비에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2편	수사의 기본이론	1	
	임의수사 및 강제수사		
	대인적 강제처분	2	
	대물적 강제처분	1	
3편	수사의 종결	1	
	소송절차		
4편	공소권이론	1	
	공판절차의 기초이론		
	소송의 주체	4	
	공판심리의 범위		
5편	공판절차의 진행	1	
	증거법 서설		
	증거능력	4	
6편	증명력	1	
	재판 일반론	1	
	상소심절차	2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1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II. 무료 해설강의 일정 및 2차시험대비 수험전략 설명

일시	2010년 3월 16일 화요일 16 : 30부터(부산) 2010년 3월 19일 금요일 16 : 30부터(대구)
장소	부산 한겨레 경찰학원 401호 대강의실 대구 한국 경찰학원 302호 대강의실

### III. 무료 동영상 해설강의

동영상 해설 강의	고시가이드 ( <a href="http://www.policecamp.co.kr">www.policecamp.co.kr</a> )
-----------	--





- ③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 ④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 법원이 된다.

**해설** ①

- ① X 검사는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에는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4조). 검사는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제15조). 따라서 관할지정의 신청은 검사만이, 관할이전의 신청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② O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도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 변경된 위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463 판결).
- ③ O 제8조 제1항
- ④ O 대법원 2006.12.5. 자 2006초기335 전원합의체 결정

5. 제척의 원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상급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 된 경우 환송 전의 재판에 관여하더라도 제척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 ② 약식명령에 관여한 법관이 정식재판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아니다.
- ③ 형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한 판결정정신청사건에 있어서 상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전심재판에 해당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법관이 당해 형사 피고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더라도 제척원인이 되지 않는다.

**해설** ③

- ③ X 상고심판결을 담당한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한 판결정정신청사건을 심리하는 경우는 법관이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67.1.18, 66초67).
- ① O 대법원 1971.12.28, 71도1208
- ② O 대법원 2002.4.12, 2002도944
- ④ O 대법원 1999.4.13, 99도155

6. 재정신청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대상범죄에 제한 없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 기소독점주의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진정사건에 대한 검사의 내사종결처분은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다.
- ㉣ 법원은 재정신청기각결정 또는 재정신청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 ① 없음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해설** ①

- ㉠ X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260조 제1항). 따라서 고발인의 경우는 대상범죄의 제한이 따른다.
- ㉡ X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제260조 제3항).
- ㉢ X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관받은 검사가 진정사건으로 내사 후 내사종결처리한 경우, 위 내사종결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11.5. 자 91모68 결정).
- ㉣ X 법원은 재정신청 기각결정 또는 재정신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262조의3 제1항).

7. 고소·고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는 국내에서 벌어진 배우자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이 없다.
- ② 고발인이 농지전용행위를 한 사람을 甲으로 잘못 알고 甲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고발하였다 고 하더라도 乙이 농지전용행위를 한 이상 乙에 대하여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
- ③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 외에서 협의이혼 등의 방법으로 혼인 해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더 이상 이혼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간통죄의 고소취소로 간주된다.
- ④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해설 ②

- ② O 고발이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하여 그 소추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범인을 지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한 고발에서 지정한 범인이 진범인이 아니더라도 고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고발인이 농지전용행위를 한 사람을 갑으로 잘못 알고 갑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을이 농지전용행위를 한 이상 을에 대하여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1994.5.13. 선고 94도458 판결).
- ① X 형법 제2조는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이상, 그 간통죄를 범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간통행위자의 간통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외국인 배우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이 있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3656 판결).
- ③ X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혼소송의 취하는 그것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철회되어 결과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 외에서 협의이혼 등의 방법으로 혼인 해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더 이상 이혼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간통고소는 '이혼소송의 계속'과 선택적 관계에 있는 '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고소의 유효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도7939 판결).
- ④ X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제225조 제2항).

8. 구속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이나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거나 질병으로 인한 출정 불능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 그 정지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말일이 공휴일이라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구속기간연장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구속기간만료일로부터 기산한다.
- ④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없으나 준항고는 할 수 있다.

해설 ①

- ① O 제22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제298조제4항(공소장변경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 제306조제1항(피고인의 심신상실과 공판절차 정지) 및 제2항(피고인의 질병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구속기간 및 구속 갱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92조 제3항).
- ② X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제66조 제3항).
- ③ X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구속 기간만료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규칙 제98조).
- ④ X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에서 말하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소법원만을 가리키므로, 같은 법 제205조 제1항 소정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02조,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지방법원 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아니므로 그가 한 재판은 같은 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대법원 1997. 6. 16. 자 97모1 결정).

9.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 ③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된다.
- ④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③

- ③ X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제214조의2 제8항).
- ① O 제214조의2 제1항
- ② O 제214조의3 제1항
- ④ O 형사소송법은 수사단계에서의 체포와 구속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를 규정한 같은 법 제214조의2에서 체포와 구속을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4항에 기소 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의 대상자가 '구속된 피의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4조의3 제2항의 취지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8. 27. 자 97모21 결정).

10.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 따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내용 인정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의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 ④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해설** ②

- 1) 우리 형사소송법에 규정한 검사이외의 수사기관에는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3도6548 판결).
- 2)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의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됨이 마땅한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진술서의 형식으로 피의자로 하여금 작성하여 제출케 한 경우에는 그 진술서의 증거능력 유무는 검사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구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2.9.14. 선고 82도1479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 3)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태도 :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고 규정하여 전·합 관례의 태도를 명문으로 반영하였다.
- 4) 결론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제312조 제3항), 따라서 미국 범죄수사대(CID),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관들에 의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

13. 탄핵과 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증인의 법정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되나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 반대신문에서는 증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은 할 수 있으나 주신문에서 탄핵신문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은 진술자의 신용성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탄핵목적의 신문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④

- ④ X 변호인이 주장하는 불법연행 등 각 위법사유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필지언정 공소제기의 절차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1586 판결).
- ① O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제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 ② O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은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형사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임을 선언하고 있고, 이에 따라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정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도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심리의 공개금지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바, 원심이 공소외인에 대한 증인신문절차의 공개금지사유로 삼은 위와 같은 사정이 '국가의 안녕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고, 달리 기록상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공개금지사유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공개금지 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소외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54 판결).
- ③ O 대법원 1982.6.22. 선고 82도898 판결

15.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검사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사법경찰관작성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다르다.
- ②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필요성과 특신상태의 증명을 필요로 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작성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특신상태의 증명이 필요하다.
- ④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와 사법경찰관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다르다.

해설 ③

- ③ 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6항).
- ① O 검사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제312조 제4항,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제312조 제6항이 적용되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차이가 있다.
- ② O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6조 제2항).
- ④ O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감정서는 제313조 제2항,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제312조 제4항이 적용되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차이가 있다.

16. 甲은 경찰관에게 자신이 야간에 어떤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100만원을 훔쳤다고 자수하였다. 경찰관은 甲을 데리고 범행을 했다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보았으나 甲이 범행한 장소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므로 피해자를 조사하지 못하였고, 피해금품 100만원은 甲이 모두 소비하였다고 하여 이를 압수하지 못하고 소비처 등에 대한 조사도 못한 상태로 甲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甲은 검찰에서도 범행을 자백하였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된 후, 제1심 공판절차에서도 “1999. 3월 일자 불상 23:00경 서울 서초구 이하불상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 100만원을 절취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간이공판절차에 해당하므로 자백 외에 다른 증거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
- ② 甲은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보강증거가 필요 없다.
- ③ 甲이 절도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 ④ 피고인의 자백 밖에 없으므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해설 ④

- ④ O 자백보강법칙에 의하여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설문의 경우는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제310조).
- ① X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자백보강법칙은 배제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므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 ② X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에도 보강증거는 필요하다.
- ③ X 범의(즉, 고의)는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61.8.16, 61도171 판결).

17. 유죄판결 이유에 명시할 사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 조각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한다.



- ㉠ ○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534 판결
- ㉡ ○ 대법원 1994.2.8. 선고 93도2563 판결
- ㉢ ○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 노역장 환형유치 1일 20,000원, 판시 제3 내지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의 형을 각 선고한 제1심 판결 중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부분과 판시 제3 내지 7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 노역장 환형유치 1일 금 10,000원, 판시 제3 내지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의 형을 각 선고하였는바, 판시 제2죄에 관하여 징역형의 형기가 단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의 액수가 같고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기간이 제1심에서 선고한 환형유치기간보다 길어졌다고 하여 원심의 형량이 제1심의 그것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1.11. 선고 93도2894 판결).
- ㉣ X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있어서, 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기이다 그 집행유예기간만을 제1심 보다 장기로 하여 형을 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형의 집행유예기간을 연장함은 형벌권의 소멸기간을 연장하여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저하하는 것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대법원 1983.10.11. 선고 83도2034 판결).

19. 준항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가 허용된다.
- ② 구속피고인에 대한 접견신청에 대해 수사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확정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해 준항고의 형식으로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를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 ④ 형사소송법 제3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해설 ④



해설 ①

- 1) 적용되는 것 : ㉠㉡㉢  
 2) 적용이 배제되는 것 : ㉣㉤㉥㉦㉧

[참고] 약식절차 개관

	약식절차
근거	형소법 448조
취지	소송경제, 피고인의 이익보호
성질	결정도 판결도 아닌 특별한 형식의 재판
관할법원	지방법원
대상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법정형 기준)
청구권자	검사
청구방식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심리형태	서면심사, 비공개주의(피고인 불출석)
선고	▶ 청구시부터 14일 이내에 ▶ 재산형만 가능(∴ 구류 불가) ▶ 가납명령 가능 ▶ 무죄, 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재판 불가
효력	▶ 확정판결과 동일(기판력과 집행력 발생, 재심·비상상고의 대상) ▶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발령시
형의 집행	검사
실효	정식재판확정시
증거에 관한 법칙 적용	증거재판주의, <b>자백배제법칙</b> , <b>자백보강법칙</b> , <b>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b>
증거에 관한 법칙 배제	▶ 전문법칙(즉, 312이하 전문증거에 관한 규정) ▶ 직접심리주의
불이익변경 금지	적용 됨
공소장일본주의	적용 안 됨
공소장변경	불허
정식재판 청구권자	▶ 검사, 피고인(포기 불가) ▶ 법정대리인(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도 가능) ▶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대리인 또는 변호인(명시적 의사에 반할 수 없음)
정식재판 청구기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방식	서면
정식재판 청구취하	1심판결선고 전까지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늦었군요 0시 26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

생각납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가 컷을 넘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었던 그때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그때로 돌아간다면요...

전, 이렇게 할 겁니다.

컷을 넘지 못한 문제점은 정확히 분석을 해서, 남보다 앞서서 다음 시험을 준비할 겁니다.

당당히 내 자신의 문제점을 오픈하는 용기, 다시금 자리에 앉아 책을 펼치는 뜻심, 이것은 자신에 대한 '애정과 자신감' 이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바로 시작 하세요' '지금 많은 수험생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